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여성복지 - 저소득한부모	3
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	3
가구원수별 선정기준	3
지원현황	3
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	4

여성복지

여성단체/시설

 · 저소득한부모 · 아이돌봄지원사업 · 가정폭력 · 여성폭력1366

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

-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: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
- 조손가족 :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
- 청소년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(모자가족 및 부자가족)으로서,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(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)

가구원수별 선정기준

※ 단위: 원/월

구분		2인	3인	4인	5인	6인
2020년 기준 중위소득	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
(참고)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%		926,424	1,195,185	1,462,887	1,727,212	1,988,581
한부모 및 조손가족	기준중위소득 52%	1,605,801	2,071,654	2,535,671	2,993,834	3,446,874
	기준중위소득 60%	1,852,847	2,390,370	2,925,774	3,454,424	3,977,162
청소년 한부모가족	기준중위소득 60%	1,852,847	2,390,370	2,925,774	3,454,424	3,977,162
	기준중위소득 72%	2,223,417	2,868,444	3,510,929	4,145,309	4,772,594

※ 신청문의처 :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실및여성친화팀

지원현황

- 아동양육비 :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0,000원 지급
- 추가아동양육비 :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의 아동양육비 월 50,000원 추가 지급
- 고교생 자녀학비 :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% 지원 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중고생 학용품비 :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자녀에게 8.3만원
- 장애가정생활용품 :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세대당 50만원 이내 1회 지원
- 생활지원금 : 저소득 한부모 : 월 60,000원 -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: 월 30,000원 현금계좌입금 세대당 지급
- 대입자녀학자금 : 대학 신입생에 실납입액의 1,000,000원 한도에서 1회 지원
- 저소득한부모가정 생신위문 : 한부모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자, 생신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

◎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

- 아동양육비 :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0,000원
- 검정고시 학습비 :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,540,000원 이내
- 고등학생 교육비 :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
- 자립지원촉진수당 :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, 월 10만원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